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22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 허성무·김동아·허종식

박선원 • 황정아 • 송재봉

김교흥 • 권향엽 • 이강일

정혜경 • 이재관 • 윤종오

민홍철・김 윤・이정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 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운영사업이 2023년 종료되었으나, 제로페이 운영사업은 지난 5년간 5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맹점 수가 2024년 1월 기준 182만개에 이르렀고, 그간 온누리상품권 거래와 지역사회 가맹점 결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므로 제로페이 운영 고도화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율을 40% 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부터"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로, "제4호"를 "제2호의2·제4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및"을 "제2호, 제2호의2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중교통이용분 및"을 "대중교통이용분·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 및"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를 "제2항제7호"로 한다.

2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그 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용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수단(이하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금액의 합계액(이하이 항에서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 과 같음) 략)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호부터-----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제2호의2·제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2호의2 및---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 3. (생략)
-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
 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
 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2	의2.	「소	상공	강인	보さ	<u> </u>	<u> </u>	지	<u>원</u>
	에 관	·한	법퉏	<u> </u>	제2	,조·	케	따	른
	<u>소상</u>	공인	과 .	コ 9	외의	사	.업	자	로
	<u>부터</u>	재호	화 5	또는	용	역을	<u>)</u>	제	공
	받고	ユ	대는	급을	지급	급결	제	하	도
	<u>록</u> さ	하는	급	융정	見え	허리	운	용	체
	계로/	서 1	대통	궝링	형으.	로	정	하-	는
	일정	규모	근 (이하	사	업기	나어		대
	해서-	는 :	결제	수수	三豆.	를	부	과	<u>하</u>
	지 여	나니ㅎ	하는	등	대통	통령	령	<u>0</u>	로
	정하	는	3건	을	충족	하님	<u>=</u>	결	제
	<u>수단(</u>	(이ㅎ	} "	<u>소</u> 싱	공약	인간	-편	결	제
	시스	템"ㅇ]라	한1	구)으) c) ક	}_	금
	액의	합?	계액	(0)	하	(ه	항	에	서
	<u>"</u> 소싱	공인]간	편결	제거	시스	템	사	용
	분"o	라	한디	}) ×	10	0분	의	40	<u>C</u>
3.	(현	행과	같-	음)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 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 7. (생략)

- ③ ~ ⑨ (생 략)
- ①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 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 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 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및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
	<u>분</u>
5.	
	<u>대중</u>
	교통이용분, 소상공인간편결
	제시스템사용분, 직불카드등
	<u>사용분</u>
6	• 7. (현행과 같음)
(3	
<u>(10</u>	
	,
	·
	 _

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 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 <u>제7호</u>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항제1호,		
<u>의2</u>		 	
2. 제2	<u>항제7호</u> -	 	
		 _	